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

1

제정이유

-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,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.

2

법률 적용대상

① 적용 대상기관

-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
- 각급 학교,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,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

② 적용 대상자

-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
- 공직자의 배우자, 공무수행사인, 일반국민(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)

3

부정청탁의 금지

① 부정청탁의 개념

-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
-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
-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 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(7개)

② 부정청탁의 금지 직무 유형

- 인가·허가·면허 등 처리 업무
- 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 직무
-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에 관한 직무
-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·탈락 직무
- 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 직무
-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
- 특정인 계약 선정·탈락에 개입
- 보조금·기금 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관한 직무
-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
- 학교 입학·성적 등 처리 직무
-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직무
-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
-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등 조작, 위법사항 직무
- 사건의 수사·재판·결정·조정·중재 등 관련 직무
- 위의 유형에 대한 지위·권한 남용

③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

- 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·해결을 요구

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·기준의 제정·개정·폐지를 제안·건의하는 등 특정 행위 요구

- 선출직 공직자, 정당,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또는 정책·사업제도 및 운영에 관하여 제안·건의하는 행위
-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
-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신청·요구·결과 등 확인하는 행위
- 직무·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 신청요구
- 질의·상담을 통한 법령·제도 등 설명·해석요구
-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

4 금품등의 수수 금지

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(제8조, 제9조)

-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
-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
-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
-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

②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(제10조)

- 공직자등이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
-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,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

5 징계 및 벌칙

①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, 형벌·과태료와 징계는 병과

[위반행위별 처벌내용]

유형	위 반 행 위	제재 수준
부정 청탁 금지	·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	제재없음
	·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	1천만원 이하 과태료
	·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(공직자 제외)	2천만원 이하 과태료
	·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	3천만원 이하 과태료
	·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	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
금품 수수 금지	·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·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·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	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
	·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·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·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자	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
	·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	500만원 이하 과태료

6

기타 참고 사항

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

- 위로 · 격려 ·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- 원활한 직무수행 · 사교 · 의례 ·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· 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
-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-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
-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
-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· 숙박 · 음식물 등의 금품 등

-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·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
- 그 밖에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

② 직무수행, 사교, 부조 목적 등 수수 범위

유형	대상	공무원 행동강령	시행령
①음식물	전체 적용 대상	3만원	3만원
②선물		수수금지	5만원
③경조사비		5만원	10만원

※ 경조사비와 선물,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(예시: ①+②=50,000원/①+②+③=100,000원)

③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범위

(단위:만원/1시간)

유형	대상	공무원 행동강령	시행령
강연료	공무원	장관급이상	40
		차관급이상	30
		4급이상	23
		5급이하	12
	공직유관기관	기관장	40
		임원	30
		직원	20
	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	공무원의 비슷한 직급에 준하여 결정	100

※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/2을 넘지 못함(예시: 장관급 2시간 강의= 50+25=75)
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,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.

※ 기고(寄稿)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이 상한